

‘호주인’의 경계 설정: 호주 민족 정체성의 등장과 변화*

김범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본 논문은 호주가 1770년 영국에 병합된 이후 1901년 연방 독립을 거쳐 20세기 독립 주권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호주인’의 경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경계, 특히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범주에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배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 시기 대부분의 정치공동체가 직면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 문제에 직면하여 근대 국가는 공통의 혈연, 언어, 문화, 역사 등을 공유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공통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국민으로 재편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한편 ‘이방인’을 ‘타자’화하고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 설정은 국민들에게만 국적 또는 시민권을 부여하고 ‘비국민들(non-nationals)’에게는 이러한 권리를 부정함으로써 법적·제도적으로 표상되었다. 본 논문은 호주 사례에 초점을 맞춰 이러한 국민의 경계 설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호주인’의 경계 설정이 한편으로는 영국과의 연관성을 단절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백인계 이민자와 애버리진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음을 보여주고자 하며, 앞으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호주인’의 경계가 더욱 확장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주제어 호주, 민족 정체성, 국적, 시민권, 이민, 애버리진

I. 서론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경계(boundaries)’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 특히 근대 이후 가장 중요한 정치공동체인 민족국가(nation-state)를 구성하는 ‘국민(nationals)’의 범주에 누구를 ‘포함(inclusion)’하고 누구를 ‘배제(exclusion)’할 것인가의 문제는 근대국가 형성 시기 대부분의 정치공동체가 직면했던 가장 중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을 밝혀둔다. 연구비를 지원해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더불어 2012년 5월 11일 “세계의 중심이동과 한반도 II + 현대 호주사회의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본 논문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장혜성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 문제에 직면하여 근대 정치공동체들은 공통의 혈연, 언어, 문화, 역사 등을 공유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공통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공유하는 (또는 공유하는 것으로 '상상'하는) 사람들을 '국민'으로 재편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한편 '이방인(strangers)'을 '타자(Others)'화하고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김범수, 2009: 177-8).¹ 그리고 이러한 경계 설정은 대부분의 정치공동체에서 '국민'에게만 국적(nationality) 또는 시민권(citizenship)을 부여하고 '비국민들(non-nationals)'에게는 이러한 권리를 부정함으로써, 그리고 이민 정책이나 귀화 정책 등을 통해 누구를 구성원으로 받아들일지 누구를 구성원으로부터 배제할지 법·제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마지막으로 문화 정책, 역사 서술 등을 통해 '국민'의 이상형을 사회·문화적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규정된 국민의 범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국민'으로 '타자화'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호주의 사례에 초점을 맞춰 이러한 '국민'의 경계 설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회적 측면과 법적·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호주의 '근대 역사'는 1770년 영국 해군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이 현재의 시드니(Sydney) 근처 보터니(Botany) 만에 도착하여 이 지역을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라는 이름으로 영국에 합병함과 함께 시작되었다.² 이후 호주는 1786년 당시 영국 내무대신이었던 시드니(Sydney) 경의 제의로 부랑자들과 범죄자들을 유배하기 위한 영국의 유배지로 결정되었다. 이 조치에 따라

¹ 앤더슨(Benedict Anderson)에 의하면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 시기 '인쇄 자본주의(print capitalism)'의 발전은 직접적 상호작용과 대면접촉이 없던 사람들 사이에 신문, 소설, 잡지 등의 미디어를 매개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동시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상상'을 부여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소속감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서 '민족(nation)'을 형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민족의 등장 이후 근대 국가는 공통의 혈연, 언어, 문화,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공통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상상'하는 민족 구성원을 '국민(nationals)'으로 재편할 수 있었다(Anderson, 1983).

² 물론 제임스 쿡 선장이 호주에 도착하기 이전에도 수많은 유럽인들이(주로 스페인과 네덜란드 선원들이) 호주에 도착하여 지형을 탐사하였고 그리고 그 이전에 수십 만의 원주민들이 수만 년 동안 호주에서 생활해 왔다. 그러나 호주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제임스 쿡 선장의 도착과 함께 이루어진 영국 식민지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 하겠다(Clarke, 1995: 17-52).

1788년 1월 26일 수백 명의 죄수들을 싣고 현재의 시드니 부근에 도착한 영국 해군 아더 필립(Arthur Philip) 대령이 1788년 2월 7일 뉴 사우스 웨일즈를 영국의 식민지로 공표하고 총독으로 취임하면서 호주는 공식적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후 1868년까지 약 16만 명에 달하는 죄수들이 영국에서 호주로 이송되었으며(이 가운데 약 25,000명은 여성), 이와 별개로 1830년대부터 영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자유 정착민들(free settlers)'이 호주로 이주해왔다. 특히 1850년대 '골드러시(gold rushes)'와 함께 금광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영국, 아일랜드, 유럽, 북미, 중국 등지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호주로 이주해왔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호주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1850년 40만 명 수준이던 인구가 1860년에는 115만 명으로, 그리고 1880년에는 223만 명 수준까지 증가하였다(Clarke, 1995: 35-115; 양승윤 외, 2006: 30-8).

이처럼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독립 식민지들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을 배제하고 보다 원활한 경제 및 교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식민지들이 연방을 구성하여 영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18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³ 실례로 1889년 10월 24일 당시 뉴 사우스 웨일즈의 수상이었던 헨리 파크스(Henry Parkes) 경은 텐터필드예술학교(Tenterfield School of Arts)에서 행한 연설에서 호주의 6개 영국 식민지(뉴 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사우스 오스트랄리아, 타스마니아, 퀸스랜드, 웨스턴 오스트랄리아)가 연방을 구성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1890년대를 거치며 호주 내부에서 더욱 확산되었고 결국 1899년 뉴 사우스 웨일즈를 비롯한 5개 식민지에서 호주연방 구성과 독립을 규정한 헌법이 국민투표를 통과하였다(웨스턴 오스트랄리아에서는 1900년 7월 3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통과). 이후 호주 연방 헌법은 1900년 7월 5일 영국 의회의 승인을 얻고 1900년 7월 9일 빅토리아

³ 영국의 식민지화 초기 호주와 뉴질랜드는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라는 하나의 식민지하에 있었고 한명의 총독에 의해 통치되었다. 그러나 점차 식민지가 확장됨에 따라 1841년 뉴질랜드(New Zealand)가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식민지가 되었고, 1851년에는 빅토리아(Victoria)와 사우스 오스트랄리아(South Australia)가, 그리고 1856년에는 타스마니아(Tasmania)가 기존의 밴 디멘즈 랜드(Van Diemen's Land)에서 이름을 바꿔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분리되었다. 이후 1859년 퀸스랜드(Queen's Land)가, 그리고 1890년에는 웨스턴 오스트랄리아(Western Australia)가 독립 식민지가 되었다.

아(Victoria) 여왕의 동의를 얻어 1900년 9월 17일 공식 선포되었다. 이에 호주는 1901년 1월 1일 6개 식민지 연합으로 구성된 영연방 자치국가(the Commonwealth of Australia)로 독립할 수 있었다(Gollan, 1955: 145-95).

호주는 그러나 독립 이후에도 영연방 소속 국가로 영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현재까지도 일부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호주는 1901년 독립 이후에도 한동안 “대영 제국 소속 자치국(Dominion of the British Empire)”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1942년 〈웨스트민스터협약(Westminster Statute)〉⁴ 채택으로 영국 의회와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법적 독립성을 확보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Queen Elizabeth II)을 자국 국왕이자 상징적 국가수반으로 인정해 오고 있다(Wikipedia, 2012a; 2012b).⁵ 또한 영국 여왕이 임

⁴ 웨스트민스터 협약은 19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22일 사이 런던에서 개최된 제6차 대영제국 자치국(Dominions of the British Empire) 수상들 간 제국회담(the Imperial Conference)에서 합의된 발포어선언(the Balfour Declaration)을 기초로 만들어진 협약으로 대영제국 자치국, 즉 캐나다(Canada), 아일랜드(the Irish Free State), 남아프리카(South Africa), 호주(Australia), 뉴질랜드(New Zealand), 뉴파운드랜드(Newfoundland) 등이 영국(the United Kingdom)과 법적으로 평등한 지위에 있음을, 즉 대내외적 문제에 있어 영국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 지위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1931년 12월 11일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이와 동시에 캐나다, 아일랜드, 남아프리카에 적용되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는 호주 의회가 1942년에, 그리고 뉴질랜드 의회가 1947년에 이 협약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비준함으로써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뉴파운드랜드는 이 협약을 채택하지 않은 채 영국의 직접 통치 하에 다시 놓였다가 1947년 캐나다로 귀속되었다. 이 협약 발효에 따라 영국 의회(the British Parliament)와 정부(the British Government)는 더 이상 자치국에 대해 입법권과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자치국 의회와 정부가 자국 문제에 있어 법적 독립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협약은 또한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Queen Elizabeth II)을 협약 채택 국가들의 상징적 국가수반으로 규정하고 있다(Wikipedia, 2012a).

⁵ 1995년 당시 노동당의 키팅(Paul Keating) 호주 총리는 호주가 아태지역의 일원으로 독자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호주의 정체를 입헌군주제(Monarchy)에서 공화제(Federal Republic of Australia)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1998년 2월 2~13일 기간 동안 공화제 도입 논의를 위한 헌법회의가 정부 임명 대표 76명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 76명 등 총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많은 논란 끝에 결국 상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선출하여 국가 원수로 삼는 공화제 개헌안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 헌법 개정안이 1999년 11월 6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44.8%의 찬성만을 얻어 부결됨으로써 공화국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양승윤 외, 2006: 83). 현재 호주를 비롯하여 안티구아 바부다(Antigua and Barbuda) 바하마(the Bahamas), 바바도스(Barbados), 벨리제(Belize), 캐나다(Canada), 그레나다(Grenada), 자마йка(Jamaica), 뉴질랜드(New Zealand),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 세인트 키츠 앤드 네비스(Saint Kitts and Nevis), 세인트 루시아(Saint Lucia), 세인트 빈센트 앤드 그레나딘(Saint Vincent

명한 총독(Governor-General)이 형식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호주연방 정부 수반으로 연방 헌법에 의거 연방 의회를 소집하고 해산할 수 있는 권한,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인준할 수 있는 권한, 각료와 법관을 임명할 권한, 사면권, 국군 통수권 등을 가지고 있다(양승윤 외, 2006: 59).⁶

식민지 시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러한 영국과의 특수 관계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위에서 언급한 1942년 〈웨스트민스터협약〉 채택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 국정 운영에 있어서 완전한 독립 국가로 입법, 사법, 행정, 외교 분야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영국과 호주 양국 의회가 1986년 〈호주법(Australia Act 1986)〉으로 불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영국 의회와 정부가 호주의 입법, 행정, 사법에 간섭할 수 있는 법적 여지는 사라졌다(Wikipedia, 2012c).⁷ 현재 호주의 국정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 권한은 연방 총리가 이끄는 연방 정부와 각 주 주지사가 이끄는 주정부가 가지고 있다.

이처럼 호주의 지위가 영국 식민지에서 영연방 소속 독립 자치국으로, 그리

and the Grenadines), 솔로몬제도(Solomon Islands), 투발루(Tuvalu) 등 15개 국가가 주권 국가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을 자국 국왕이자 상징적 국가수반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과 함께 이들 15개 국가는 다른 ‘영연방 국가(the Commonwealth of Nations)’와 별도로 ‘영연방 군주국(the Commonwealth realms)’으로 불리고 있다(Wikipedia, 2012b).

⁶ 연방 총독은 호주 연방 정부 내각의 제청에 의해 영국 여왕이 임명하며 대외적으로 호주를 대표한다. 일반적으로 연방 총독은 여왕을 대행하여 호주를 통치하는 상징적 권한을 행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 첫째, 연방 총독은 선거 결과 다수당이 없어 내각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즉 소위 ‘헝 의회(hung parliament)’ 상황에서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둘째, 총리가 의회의 신임을 잃었을 경우 총리를 해임(dismiss)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셋째, 총리와 장관이 불법적(unlawful) 행위를 했을 경우 이들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넷째, 총리가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의 해산을 요구한 경우에도 하원 해산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연방 총독의 임기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5년을 임기로 한다(Governor-General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2).

⁷ 1986년 영국과 호주 양국 의회에서 통과된 〈호주법〉은 1942년 호주의 웨스트민스터 협약 채택 이후에도 양국 사이에 남아 있던 법적 통치 가능성을 제거하였다. 위의 각주 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가 1942년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협약은 호주 대내외적 문제 처리에 있어 호주 연방 의회와 연방 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은 영국 의회와 정부가 호주 연방의 개별 주(State) 입법과 행정에 간섭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남겨주고 있었다. 이에 영국과 호주 양국 의회는 1986년 ‘1986년 호주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러한 여지를 제거하였다(Wikipedia, 2012c).

고 최종적으로 영국에서 독립한 주권 국가로 변화함에 따라 ‘호주인’의 경계 설정 또한 계속 변화해왔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법적·제도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다음절에서 ‘영국인’과 구별되는 ‘호주인’의 개념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식민지 시기와 호주연방 독립 전후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III절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호주인’의 경계 설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IV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한 후 최근 아시아계 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호주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가운데 앞으로 호주인의 경계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논의하고자 한다.

II. ‘호주인’의 등장

호주가 영연방 자치국가로 독립한 것은 1901년 1월 1일이지만 법적 관념으로 ‘호주인’이 등장한 것은, 즉 ‘호주 시민(Australian citizen)’을 의미하는 ‘호주인’의 범주가 법으로 명문화된 것은 1948년 12월 21일 제정된 <국적시민권법(Nationality and Citizenship Act 1948)>이 발효되기 시작한 1949년 1월 26일 이후부터이다. 이 법 발효 이전까지 호주인들은 호주연방 독립 이후에도 법적으로는 ‘호주 시민’이 아닌 ‘영국 신민(British subjects)’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영국인들과 (그리고 다른 영연방 소속 국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영국 국적(British nationality)’을 공유하고 있었다(Klapdor et al., 2009: 1). 그러나 이러한 법적 관념의 등장과 별도로 하나의 사회적 관념으로서 ‘호주인’이 등장한 것은 19세기 중반의 일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호주인’ 관념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관념이 식민지 시기와 호주연방 독립을 거치며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식민지 개척 초기 호주 정착민들이 대부분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해 온 사람들(즉, 죄수로 유형 온 사람들이거나 또는 자유 정착민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을 ‘영국인’으로 생각하였으며 호주 사회를 영국계 백인 단일

인종으로 이루어진 단일 문화권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 내부에 아무런 구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클라크(F.G. Clarke)가 지적하듯이 식민지 개척 초기 과도기를 거쳐 1820년대에 들어 서면서 뉴 사우스 웨일즈 식민지 사회는 이미 사회적으로 계층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자유 정착민’들과 ‘죄수 출신자’들 사이에 커다란 사회적 구분이 존재하고 있었다. 실제로 자유 정착민들은 자신들이 유배 죄수들 또는 죄수 출신자들보다 사회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였고 스스로를 ‘순종 메리노’나 ‘특권 계급’으로 불렀다. 반면 죄수 출신자들을 ‘형기 만료자’라고 부르며 사회적으로 멸시하고 상거래와 일상생활 등에서 차별대우 하였다(Clarke, 1995: 87-8).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해온 자유 정착민으로 당시 호주 유력지인 『모니터(Monitor)』지의 편집장이 된 홀(E. S. Hall)은 죄수 출신자들을 비하하며 다음과 같이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제 더 이상 영국인처럼 생각하거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격분할 수 없는 그들은 불쌍한 노예근성을 가진 종족이 되었다. 그들의 영혼은 — 매질과 족쇄와 지하 감옥, 그리고 호주식 이단 심문이 그들을 흑인 수준으로 떨어지게 하여 — 이제 더 이상 영국인이 아닌 호주인일 뿐이다”(Clarke, 1995: 102). 이러한 점에서 1820년대는 자유 정착민 출신 식민지 기득권층이 자신들을 제외한 대다수 식민지인들을 비방하며 자신들을 죄수나 죄수 후손들과 엄격히 구분하려고 시도하였던 시기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 기득권층에 반대하며 죄수 출신자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실례로 호주 태생의 웬트워스(W. C. Wentworth)는 죄수 출신자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오스트레일리안(Australian)』이라는 신문을 창간하였고 신문 지면을 통해 죄수 출신자들을 사회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며 억압하는 기득권층의 행태를 비판하였다. 구체적으로 웬트워스는 1825년 『오스트레일리안』지에 “달링 총독 부임 환영사”를 발표하면서 자유 정착민들에 대한 토지 불하가 호주 태생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1826년에는 자본을 가진 자유 정착민들보다 식민지에 먼저 정착한 형기 만료자들이 식민지의 열매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싣기도 하였다(Clarke, 1995: 98).⁸ 이러한 주장은 당시 식민지 사회

⁸ 1824년 런던에서 발족한 호주 농업공사는 영국 자산가들의 호주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거대 자

층민을 구성하고 있던 죄수 출신자들과 호주 태생인들 사이에 일고 있던 자존심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나 밴 디멘즈 랜드(Van Diemen's Land)에서나, 모든 백인들은 출생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호주 대륙은 그곳에서 출생한 자와 그곳을 개척한 죄수들의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졌다(Clark, 1995: 97). 죄수 출신자와 자유 정착민 기득권층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그러나 자유 이주민이 늘어나고 죄수 유형이 줄어들면서 1840년대 이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1851년 빅토리아와 사우스 오스트랄리아가, 그리고 1856년 타스마니아(밴 디멘즈 랜드에서 개칭)와 1859년 퀸스랜드가 뉴 사우스 웨일즈로부터 분리되어 독립 식민지가 되면서 독립 식민지 주민들 사이에 서로를 구분하는 일종의 ‘지방주의’ 관념이 자라나게 되었다. 클라크가 지적하듯이 호주 식민지들은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개척되어 경제적 발달 정도가 서로 달랐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실제로 식민지 주요 도시들은 수천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었으며 웨스턴 오스트랄리아는 대부분의 동부 사람들에게 “중국이나 티베트처럼” 여전히 알 수 없는 땅으로 여겨졌다. 또한 작은 식민지들은 뉴 사우스 웨일즈나 빅토리아처럼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식민지들과의 관계에서 정치적으로 “무력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도덕적으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우스 오스트랄리아 사람들”은 죄수 유형지로 시작한 다른 식민지 출신 주민들을 “깎보거나 그들의 혈통을 의심”하였다. 게다가 뉴 사우스 웨일즈와 빅토리아는 상호 경쟁하며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나갔으며 경제 체제에 있어서도 뉴 사우스 웨일즈는 자유무역주의를 그리고 빅토리아는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식민지들이 각자 나름대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제 갈 길을 가려 하였다(Clark, 1995: 207). 이러한 지방주의 관념은 무역과 통신, 인적 교류를 촉진시켜 줄 철도에서 독립 식민지들 사이에 다른 철도 궤간을 채택하는 정책 등으로

본금을 가진 자들에게 대규모의 땅을 불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당시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자산을 갖지 못한 호주 태생 하층민들과 형기 만료자들은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먹고 사는데 필요한 토지를 불하받는 대신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 의해 고용되는 임금노동자가 되었다(Clark, 1995: 101).

표출되었는데 실제 철도 궤간을 정하는데 있어 퀸스랜드는 3피트 6인치, 빅토리아는 5피트 3인치, 뉴 사우스 웨일즈는 4피트 8.5인치, 사우스 오스트랄리아는 처음에는 5피트 3인치였다가 나중에는 퀸스랜드와 같이 3피트 6인치의 궤간을 채택하였다(Clarke, 1995: 185).

그러나 호주 식민지인들은 식민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1860년대와 1870년대를 거치며 자신들이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더 많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이들은 “공통의 언어, 공통의 선조, 그리고 같은 호주인”이라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영국 본토에 거주하는 영국인들과 구별되는 “호주에 거주하는 영국인”으로서의 일종의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Clarke, 1995: 185, 212). 이들은 또한 골란(Gollan, 1955: 145)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물론 아직까지는 영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고 영국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 상당수 남아 있었지만, 호주가 더 이상 영국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온 그리고 본토 영국인과 다른 역사를 가진 자신들의 공동체임을 느끼기 시작하였다.⁹ 1880년대 퀸스랜드 사회주의 운동의 지도자였던 레인(William Lane)은 당시 대부분의 호주 사람들이 느끼고 있던 호주 민족 정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호주를 위해(for this Australia), 그리고 지금 막 나타나기 시작한 [호주의] 민족 정체성(nationality)을 위해, 마지막으로 자신의 운명을 덮고 있던 커튼을 막 열어 체친 진보적 [호주] 국민들(people)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의 뒤에는 부서져가는 제국의 추락하는 왕실과 노망난 사람들(dotard races)로 뒤덮인 과거가 있고 우리의 앞에는 젊음의 열정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호주가 나아가야 할 미래가 있다”(Gollan, 1955: 146).

이러한 민족주의의 관념은 1880년대와 1890년대를 거치며 『불레틴(Bulletin)』(1880년 시드니에서 창간), 『부메랑(Boomerang)』(1878년 브리스번에서 창간) 등의 신문 지면을

⁹ 이러한 관념들은 호주 태생 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호주 사회 내부에서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호주 태생 인구의 비율은 1820년 당시 호주 식민지 정착민 29,407명 가운데 1,680명인 5.7%에 불과하였으나 1881년 호주 주민 232만 명 가운데 약 65%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였고 1891년에는 약 74%, 그리고 1901년에는 호주 주민 377만 명 가운데 약 77%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였다(Crowley, 1955: 13; Gollan, 1955: 145).

통해 호주 사회 곳곳으로 전파되었다. 특히 당시 뉴 사우스 웨일즈뿐 아니라 빅토리아, 타스마니아 등 호주의 다른 식민지에서도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던 『불레틴』지는 ‘호주는 호주인에게(Australia for the Australians)’라는 모토 아래 ‘우리는 모두 호주인’이라는 ‘민족 자의식(national self-consciousness)’을 호주 곳곳에 전파하는데 기여하였다(Gollan, 1995: 148). 이와 더불어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과 식민지 간 경제 교류 증가는 이들 식민지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는데 기여하였다. 실례로 철도와 전신의 발달은 식민지들이 서로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으며 서로 간에 느끼던 심리적 고립감을 허무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식민지 간 경제 교류 증가와 함께 노동자들은 식민지 경계선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일자리를 찾고자 하였으며 사업가들은 식민지 사이에 존재하는 관세 장벽을 허물고 자유무역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 1888년에는 최초로 모든 식민지의 대표들이 참가한 상공회의소 회의가 열리기도 하였고 보험과 채무 회수, 동업, 특허와 상표 등의 부분에서 모든 식민지들에 적용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대두되기도 하였다(Clarke, 1995: 207).

이러한 배경 하에 1880년대부터 많은 호주인들이 연방을 구성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실례로 대표적 연방주의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뉴 사우스 웨일즈 수상을 수차례 역임한 헨리 파크스 경(Sir Henry Parkes)은 1880년에 개최된 식민지 간 회의(intercolonial conference)에서 관세 문제와 같은 공통 관심사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연방의회(Federal Council)를 설립하자고 제의하였으며, 1889년 텐터필드예술학교에서 행한 유명한 연설에서 호주의 6개 영국 식민지(즉, 뉴 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사우스 오스트랄리아, 타스마니아, 퀸즈랜드, 웨스턴 오스트랄리아)가 직면한 방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정부를 수립하여 “모든 힘을 하나의 거대한 연방 군대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Clarke, 1995: 208). 또한 1850년대부터 공화주의 운동을 지도해왔던 존 던모어 랭(John Dunmore Lang)은 “이민자 사회는 자식과 같아서 성숙할 때까지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성숙한 이후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호주가 미국의 선례를 따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Gollan, 1995: 152). 비슷한 맥락에서 1880년대 뉴 사우스 웨일즈 입법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던 오설리번(E. W. O'Sullivan)은 1888년 9월 4일자 『시드니 모닝 헤럴드(Sydney Morning Herald)』지에 기

고한 글에서 “40년 안에 호주 인구는 2천만 명에 달할 텐데 …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16,000마일이나 떨어진 나라에 의해 지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하며 호주의 독립 필요성을 제기하였다(Gollan, 1955: 153).

이처럼 호주연방 독립을 요구하는 주장이 호주 사회 내부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1890년 2월 호주 내 여섯 개 식민지 대표와 뉴질랜드 대표들이 멜버른에 모여 호주 전체를 총괄하는 입법기구와 행정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연방헌법 초안 논의를 위한 ‘전호주 대표자회의(National Australasian Convention)’를 다음해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Gollan, 1955: 183). 이에 1891년 3월 시드니에서 개최된 대표자회의에서는 연방 정부의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퀸스랜드 수상이자 법무장관이었던 사무엘 그리피스 경(Sir Samuel Griffith)의 주도로 방위 문제에 있어 식민지들의 권한을 연방 정부로 이양하고 인구 비례에 의해 선출되는 하원과 각 식민지에서 동일한 숫자로 선출되는 상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입법부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초안이 채택되었다(Clarke, 1995: 209). 그린우드(Greenwood, 1976: 51)에 의하면 당시 이러한 연방 헌법 초안이 채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재정 통합 필요성, 공동방위군 조직 필요성, 태평양 지역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 이방인의 이민을 제한할 필요성, 사회·산업·교통 정책에 있어 통일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식민지들이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호주 내 식민지들은 뉴 기니아(New Guinea), 뉴 헤브라이드(New Hebrides) 등 태평양 도서 지역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움직임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퀸스랜드를 제외한 모든 식민지들이 아시아로부터 대규모 이민이 몰려들어와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2차 산업과 농업의 성장으로 시장이 호주 전체를 포괄하게 됨에 따라 재정 통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노동 운동이 개별 식민지 경계를 벗어나 전국적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사회정책과 산업정책에 있어서도 통일된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었다(Gollan, 1955: 181-2).

1891년 채택된 이 연방 헌법 초안은 이후 1897년 애들레이드(Adelaide)와 시드니, 1898년 멜버른에서 연이어 개최된 대표자회의에서 일부 수정되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이에 1898년 6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이 안은 빅토리아, 타스마니아, 사우스 오스트랄리아에서는 통과되었지만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는 다수

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에 필요한 80,000표를 얻는데 실패하여 부결되었다. 결국 연방 헌법 초안은 다시 한 번 뉴 사우스 웨일즈의 입장을 반영하여 수정되었고 1899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퀸스랜드를 포함한 다섯 개 식민지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웨스턴 오스트랄리아는 1900년 7월 3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연방 헌법을 통과시키고 연방 가입 최종 결정)(Gollan, 1955: 189). 이후 호주연방 헌법은 영국 의회에 제출되어 1900년 7월 5일 의회의 승인을 얻고 이어 1900년 7월 9일 빅토리아 여왕의 동의를 얻어 1900년 9월 17일 공식 선포되었다(Museum of Australian Democracy, 2012a). 그리고 이 헌법에 따라 1901년 1월 1일 여섯 개 식민지 연합으로 구성된 호주연방이 독립 자치국가로 독립함으로써 연방주의자들의 오랜 슬로건인 “하나의 국가를 위한 하나의 국민, 하나의 국민을 위한 하나의 국가”가 실현될 수 있었다(Clarke, 1995: 214).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연방 독립 이후에도 ‘호주인’들은 법적으로는 한동안 ‘호주 시민(Australian citizens)’이 아닌 ‘영국 신민(British subjects)’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영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영국 국적(British nationality)’을 공유하고 있었다. 당시 관습법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던 영국 국적법에 의하면 영국 본토에 거주하는 영국인들뿐만 아니라 식민지와 호주, 뉴질랜드, 남 아프리카, 캐나다, 뉴파운드랜드(Newfoundland) 등 영연방 소속 자치국(self-governing Dominions)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국 국왕에 충성을 바치는” “영국 신민”으로서 ‘영국 국적’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1914년 제정된 <영국 국적과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법(British Nationality and Status of Aliens Act)>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Wikipedia, 2012d).¹⁰ 한편 호주는 연방으로 독립한 이후에도 호주 국적과 시민권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영국 국적법에 따라 ‘호주인’의 법적 지위를 ‘영국 신민’으로 규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1920년 제정되어 19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국적법(Nationality Act 1920)>에 그대로 유지하였다.¹¹ 당시 호주 사람들은 자신들이 호주인이면서 동시에 영국인으로

¹⁰ 1914년 “영국 국적과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법(the British Nationality and Status of Aliens Act)”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영국 국적법은 관습법의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었다.

¹¹ 1900년 7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승인을 얻어 190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호주 연방 헌법은 호주 국적과 시민권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루벤스타인(Rubenstein,

영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오히려 영국 국적과 별개의 호주 국적(Australian nationality)을 갖는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주고등법원(High Court of Australia)은 1906년 중국계 이민자인 아 쉘웅(Ah Sheung)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결에서 “우리는 영국 국적과 구별되는 호주 국적이 존재한다는 새로운 주장에 대해 동의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2012).¹²

이처럼 연방 독립 이후 ‘호주인’들은 자신들을 “호주인인 동시에 영국인”으로 규정하며 호주 사회를 영국계 백인 단일 인종으로 이루어진 단일 문화권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백호주의(White Australian Policy)’로 불리는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을 채택하여 ‘유색 인종(coloured races)’, 특히 중국인과 태평양 도서 출신자들의 호주 이민을 억제하였다.¹³ 실례로 1901년 제정된 호주

2000: 579-80)에 의하면 이는 헌법 초안을 작성했던 사람들이 호주 국적과 시민권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호주 시민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때문에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특히 호주 국적 또는 시민권을 호주에 거주하는 ‘여왕의 신민(subjects of the Queen)’에게 부여할 경우 호주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이나 인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도 호주 국적 또는 시민권을 부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들을 배제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호주 시민권 문제를 모호하게 남겨 두었다.

¹² 아 쉘웅은 1881년부터 1901년까지 두 번의 짧은 중국 방문 기간을 제외하고 빅토리아에 계속 거주한 중국계 이민자로 빅토리아에서 귀화(naturalization)한 후 1901년 중국에 가 약 5년간 지내다 1906년 빅토리아로 돌아올 당시 1901년 제정된 연방정부의 <이민제한법(Immigration Restriction Act 1901)>에서 ‘이민자’에게 요구하는 받아쓰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입국을 거절당하고 감금당했다. 이에 아 쉘웅은 자신은 ‘이민자’가 아니라 ‘호주 국적(Australian nationality)’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민제한법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빅토리아 최고법원(the Supreme Court of Victoria)에 인신보호(habeas corpus)를 신청하였고 커센(Cussen)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아 쉘웅에 대한 석방을 명령하였다. 이후 이 사건은 호주연방 고등법원에 상고되었고, 호주연방 고등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 국적과 별개로 존재하는 호주 국적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쉘웅에게 <이민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판결, 당국에 사건 취하(abandon)를 요구하였다(Quick, 1919: 514-6).

¹³ 당시 영국계 백인 호주인들에게 가장 위협적으로 인식되었던 ‘외국인’은 중국인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인이 처음 호주로 유입된 시기는 호주에 ‘골드러시’가 시작되었던 1851년으로 이후 20여 년 동안 약 5만 명의 중국인들이 호주로 이주해 왔다. 처음에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점차 숫자가 늘어나면서(빅토리아 지역 금광으로 들어온 중국인 숫자는 1854년 약 4천 명 수준에서 1857년 23,623명 수준으로 그리고 1859년에는 42,000명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백인들과 갈등이 불거지게 되었고 이 와중에 중국인은 비도덕적이고 이교도이며 아

연방 〈이민제한법(Immigration Restriction Act 1901)〉은 ‘유색 인종’의 이민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었으나 구술시험이나 제조업 취업금지 조항 등을 통해 특정 인종의 이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다.¹⁴ 특히 이 법안은 호주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항 시 유럽에서 통용되는 언어 가운데 하나로 50자 받아쓰기 시험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당시 일자리를 찾아 호주로 입국하고자 하던 중국인과 아시아계 노동자들이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Wikipedia, 2012e). 또한 호주 정부는 1901년 12월 17일 〈태평양 도서 출신 노동자 법(Pacific Island Labourers Act 1901)〉을 제정하여 1904년 3월 31일 이후 태평양 도서 출신 노동자들의 호주 입국을 금지하였으며, 이미 호수에 입국한 자들도 190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호주를 떠날 것을 명하였다(Australian Government, 2012f). 비슷한 맥락에서 호주 정부는 1903년 〈귀화에 관한 법(Naturalization Act 1903)〉을 제정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또는 태평양 도서 출신자들의 귀화 신청을 금지하였다(Klapdor et al., 2009: 4).¹⁵ 이러한 이민정책과 귀화정책은 스트래튼과 앙(Stratton and Ang, 1994)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영국 식민지에서 영연방 소속 자치국으로 새로 독립한 호주가 민족국가라는 새로운 ‘상상의 공동체

편을 피울 뿐만 아니라 식민지의 금을 중국으로 가져간다는 편견이 확산되면서 영국계 백인 호주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게 되었다. 이에 호주 식민지 정부들은 1850년대 중반부터 중국인의 이주를 제한하려는 조치들을 취했다. 실레로 빅토리아 입법부(Victorian Legislative Council)는 1855년 중국인 이주를 제한하기 위해 중국인을 신고 오는 선주들에게 한 사람당 10파운드의 인두세를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으며(Clarke, 1995: 165-6), 1881년에는 이에 더해 중국에서 입항하는 배에 대해 100톤 당 1명씩 중국인 이민을 허용하는 내용의 〈중국인법(Chinese Act 1881)〉을 제정하기도 하였다(Rubenstein, 2000: 580-1).

¹⁴ 〈이민제한법 1901〉 초안은 “유색인종”의 이민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었으나 영국 정부는 이러한 법안이 당시 영국의 동맹국인 일본인의 호주 유입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이에 호주 정부는 “이민제한법”에 대한 영국 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이민 제한의 기준을 인종이 아닌 언어로 전환하였고, 법안에 호주로 이민을 희망하는 자들은 당시 유럽에서 통용되는 언어 중 한 언어를 선택하여 받아쓰기 시험을 보고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언어 시험은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 1958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문경희, 2011: 212).

¹⁵ 이 법에 의하면 호주연방 독립 이전 개별 식민지 법에 의해 ‘영국 시민’의 자격을 획득한, 즉 귀화한 사람들은 동일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뉴질랜드를 제외한) 태평양 도서 출신자들은 귀화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2012: 1).

(imagined community)’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영국계 백인을 핵심으로 하는 ‘인종적 순수성(racial purity)’을 중요한 ‘상징적 고리(symbolic cement)’로 사용했음을 의미한다.¹⁶

한편 ‘호주인’의 범주에서 ‘유색 인종’을 배제하고자 했던 호주인의 경계 설정 방식은 이주자뿐 아니라 영국인들의 호주 이주 이전 수만 년 전부터 호주에 정착하고 살았던 원주민인 애버리진(Aborigine)에 대한 배제로 이어졌다. 특히 독립 이전 식민지 시기부터 영국계 백인 호주인들은 애버리진을 ‘소멸할(doomed)’,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undesired)’ 인종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억압하였다. 실제로 빅토리아 주는 1869년에 이미 〈애버리진 보호법(Aboriginal Protection Act 1869)〉을 제정하여 애버리진의 일자리와 거주지뿐만 아니라 누구와 결혼할지와 같은 사적인 결혼 문제까지도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애버리진 보호위원회(the Board for the Protection of Aborigines)’에 애버리진 어린이들을 가족으로부터 강제로 분리 양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애버리진을 인종적으로 소멸시키고자 하였다(Museum of Australian Democracy, 2012b). 더 나아가 1886년 빅토리아주 의회는 〈해프캐스트법(Half-Caste Act)〉을 제정하여 소위 ‘해프캐스트’로 불리는 백인과 애버리진 사이의 ‘혼혈아’들을 애버리진 사회로부터 강제 분리하여 백인 사회로 동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애버리진 사회를 소멸시키고자 하였다(Wikipedia, 2012f). 이러한 애버리진 소멸 정책은 독립 이후에도 이어져 호주 정부는 1901년부터 1969년까지 수만 명의 애버리진 어린이들을 백인 사회에 동화시킨다는 미명하에 강제로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여 백인가정 혹은 입양기관에 입양시켰다.¹⁷ 또

¹⁶ 실제로 당시 호주 사회는 영국계 백인 단일 인종으로 이루어진 단일인종사회에 가까웠다. 1901년 조사한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당시 영국계 백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98%에 달하였으며 독일계 백인이 약 1%, 중국계가 약 0.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구 구성비로 본다면 당시 호주 사회는 영연방 소속 자치국 가운데서도 영국계 백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였다. 또한 문화의 측면에서도 당시 호주 문화는 영국 문화와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영국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Stratton and Ang, 1994). 이러한 점에서 당시 호주 사회는 화이트(Richard White)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어떤 자치국보다도 더 영국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영국보다 더 영국적인”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White, 1985: 112).

¹⁷ 이러한 정책은 공식적으로 1969년에야 폐지되었다. 비밀리에 시행된 ‘애버리진 아동제거정책’이 공공연히 알려진 계기는 1997년 호주 정부 산하 기관에 의해 출판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Bring Them Home)」라는 보고서를 통해서이다. 이 보고서는 호주 정부기관이 호주의 각종 법안

한 일부 영국계 호주인들은 애버리진을 인종적으로 소멸시키고자 20세기 초까지 이들을 공공연히 학살하기도 하였다. 실례로 애버리진에 대한 마지막 대량 학살로 알려진 1928년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지역 코니스톤(Coniston)에서 자행된 학살의 경우 백인들이 음식물과 물에 독극물을 넣어 원주민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사학자 레이놀즈(Henry Reynolds)에 의하면 식민지 개척 이후 1만 명 이상의 원주민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백인들에 의해 학살당했다고 한다(양승윤 외, 2006: 289).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1770년 영국의 호주 합병 이후 유럽에서 호주로 이송되어온 또는 자발적으로 이주해온 호주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식민지 개척 초기에는 자신들을 ‘영국인’으로, 그리고 점차 시간이 흐르며 식민지에서의 고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토 영국인과의 차이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영국에 거주하는 영국인”과 구별되는 “호주에 거주하는 영국인”으로, 마지막으로 1901년 호주연방 독립을 거치며 “호주인인 동시에 영국 국적을 가진 영국인”으로 관념하는 등 자신들의 정체성을 역사적 상황에 따라 변화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화이트(White)가 지척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영국과의 연관성 속에서 관념하였으며 자신들을 “호주로 이주해와 뿌리내린 새로운 앵글로 색슨 이민자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하였다. 이들에게 “호주 정체성 문제는 항상 호주다움(Australianness)과 영국다움(Britishness) 사이의, 즉 [영국다움과 구별되는] 독특한 호주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충동과 영국 유산의 잔재 사이의 줄다리기”였으며, 이들이 ‘영국다움’과 구별되는 ‘호주 고유 정체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호주 민족주의자들이 ‘호주의 고유함’에 대해 ‘과장하기’ 시작한 이후부터이다(White, 1985: 47). 이처럼 자신들의 정체성을 영국과의 연관성 속에서 관념화하는 가운데 이들은 다른 한편으로 ‘유색 인종,’ 특히 중국인과 태평양 도서 지역 출신자들, 그리고

을 이용해 애버리진 부모의 자녀양육권을 부정하고 그들로부터 자녀를 빼앗아 수용소나 기독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고아원 등에 강제로 감금하거나 또는 백인 가정에 입양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910년부터 1970년 사이에 적어도 100,000명 이상의 애버리진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분리 양육되었다. 이때 분리 양육된 애버리진 아동들은 ‘빼앗긴 세대(Stolen Generation)’로 불린다(문경희, 2011: 213-4).

유럽인 정착 이전부터 호주에 거주해오던 애버리진을 ‘타자’화함으로써 ‘호주인’의 범주에서 배제하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호주인의 경계 설정 방식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III.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인’의 경계 변화

호주연방 독립 이후에도 ‘영국 신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한 채 자신들을 ‘호주인인 동시에 영국인’으로 관념화하던 호주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본토 영국인들의 이해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이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 공격 이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국군, 네덜란드군, 인도군, 호주군 등을 대파하고 괌(Guam), 웨이크 아일랜드(Wake Island), 홍콩(Hong Kong), 영국령 북 보루네오(British North Borneo)와 라볼(Rabaul in New Britain),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Netherlands East Indies)와 버마(Burma)는 물론 싱가포르(Singapore)를 포함한 말레이(Malay) 반도 전체를 점령하면서 호주 안보가 위협에 처하게 되자 호주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영국인들의 운명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당시 영국의 처칠 수상은 태평양에서의 전투를 부차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었으며 유럽에서 히틀러를 패배시킨 후 일본군과 상대하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결과 만약 호주를 일본에 빼앗기게 된다면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호주는 언제라도 다시 탈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이러한 견해에 동의할 수 없었다. 동남아 지역에서 일본의 움직임에 위협을 느끼고 있던 호주인들은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지자 영국의 선전포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난공불락 요새라던 싱가포르가 1942년 2월 25일 일본군에 의해 함락당하고 1만 5천이 넘는 호주 제8사단 군인들이 전쟁포로가 된 상황에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군 전투기들에 의해 호주 북부 다윈(Darwin) 지역이 폭격을 당하고 곧이어 호주 해군 순양함 퍼스(Perth)호가 자바해(Java Sea) 전투에서 일본 해군에 격침당한 상황에서 호주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안보를 영국

에 의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당시 영국은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이어진 태평양 전투에서 태평양 함대 주력 군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즈(Prince of Wales)’호와 ‘리펠스(Repulse)’호를 상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호주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Clarke, 1995: 294-5).

이러한 배경 하에 호주연방 커틴(John Curtin) 수상은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일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941년 12월 27일자 『멜버른 헤럴드(Melbourne Herald)』지에 기고한 신년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이 미국과의 협력 방침을 선언하였다.

우리는 태평양 전투가 다른 전투에 종속되는 것으로 취급되는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호주정부는 태평양 전투를 최우선으로 중시하며 ... 미국과 협력하여 최대한 힘을 한 방향으로 모을 것이다. 나는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그리고 영국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에 어떠한 어려움도 주지 않으며 호주가 미국과 협력할 것임을 확실하게 밝힌다. 우리는 영국이 직면한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계속적인 침략 위협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힘의 분산에 따른 위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호주가 [호주의 길을] 가더라도 영국과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 우리는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여 우리의 모든 힘을 다 할 것을 결심한다(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2012: 21).

또한 1942년 2월 25일 싱가포르가 일본에 함락당한 직후 커틴 수상은 호주 방위를 위해 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에서 작전 중인 호주 제6사단과 제7사단의 호주 귀환을 명령하였다. 당시 영국의 처칠 수상은 중일전쟁에서 중국군을 돕기 위해 호주가 최소한 1개 사단(즉, 제7사단)은 버마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커틴 수상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호주로 귀환한 호주군은 뉴 기니아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후 남서태평양지역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된 맥아더(Douglas MacArthur) 사령관의 지휘 아래 미군과 연합작전을 펼쳐 1942년 5월과 6월 코랄해(Coral Sea)와 미드웨이(Midway Island)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일본군의 직접적 침략 위협으로부터 호주를 구할 수 있었다(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2012: 21-2).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안보 문제를 두고 호주와 영국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음을 경험한 호주인들은 영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호주 중심적

인 전망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1942년 호주와 영국 사이의 법적 평등을 규정한, 즉 대내외적 문제에 있어 호주 정부의 독립성을 규정한 <웨스트민스터협약> 채택으로 이어졌다.¹⁸ 이 협약 채택 이후 호주는 법적으로 영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외교, 국방 등은 물론 내치에 있어서도 더욱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호주 정부는 ‘호주 시민’의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1948년 12월 21일 <국적시민권법(Nationality and Citizenship Act 1948)>을 제정하였다.¹⁹ 1949년 1월 26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이 법에 의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호주 시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었다(Australian Government, 2012a).

1. 출생에 의해: 이 법 시행 이후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출생 시 아버지가 호주 시민인 자(제10조 제1항, 제2항).
2. 혈통에 의해: 이 법 시행 이후 호주 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a) 출생 시 i) 아버지가 호주 시민이거나 ii) 혼인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경우 어머니가 호주 시민이거나 호주 또는 뉴 기니아에 일상적(ordinarily)으로 거주하는 영국 신민으로, (b) 출생 후 1년 안에 호주 영사관에 출생 신고를 필한 자(제11조 제1항).
3. 등록에 의해: 영국과 영국 식민지,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연합(the Union of South Africa), 뉴파운드랜드(Newfoundland), 인도, 파키스탄, 남 로드시아(Southern Rhodesia), 세이린(Ceylon) 등 이 법 제7조가 적용되는 나라의 시민이거나 또는 아일랜드 시민으로 (a) 성인이며(of full age; 즉, 만 21세 이상이며) 정신 건강한(of full capacity) 사람으로 (b) 호주나 뉴 기니아에 이 법 적용 직전 8년 기간 동안 최소 5

¹⁸ 각주 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웨스트민스터 협약은 19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22일 사이 런던에서 개최된 제6차 대영제국 자치국 수상들 간 제국회담에서 합의된 발표어선언을 기초로 만들어진 협약으로 대영제국 자치국들과 영국의 법적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이 협약을 실제적으로는 1942년에 채택하였지만 2차 대전 중 호주가 채택한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협약 개시일을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일인 1939년 9월 3일로 명시하였다.

¹⁹ 캐나다가 1946년 <시민권법(Canadian Citizenship Act 1946)>을 제정한 이후 영연방 소속 국가들 간에 발생하는 국적법 충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영연방 소속 국가 정상들이 1947년 2월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각국이 국적법 제·개정을 통해 자국 시민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호주도 1948년 호주 시민권자의 범위를 법으로 명시한 <국적시민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Klapdor et al., 2009: 6).

년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5년 미만일 경우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c)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d) 영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졌으며 또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호주나 뉴 기니아에 연속하여 20년 이상 거주한 자로 (e) 호주 시민권이 부여하는 책임과 특권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f) 호주 시민권을 부여 받은 이후 호주 또는 뉴 기니아에 계속 거주할 의사를 가진 자(제12조 제1항).

4. 귀화에 의해: 영국 신민 또는 아일랜드 시민이 아닌 자(alien)와 보호령 출신자로 (a) 등록에 의한 호주 시민권 획득 조건 (a), (c), (d), (e), (f)를 충족하고 (b) 귀화 신청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호주 또는 뉴 기니아에 거주하거나 (c) 호주 또는 뉴 기니아에서 총 4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한 자로 절차에 따라 귀화를 신청하여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제15조 제1항).
5. 제25조 제1항 경과조치에 의해: 이 법 시행 직전 영국 신민이었던 자로 (a) 호주에서 태어났으며 출생 시 이 법 제10조 출생에 의한 호주 시민권 획득 조항을 적용했을 경우 호주 시민이 될 수 있었던 자; (b) 뉴 기니아에서 태어난 자; (c) 호주에서 귀화한 자; (d) 이 법 시행 직전 일상적으로 호주 또는 뉴 기니아에서 5년 이상 거주해왔던 자.
6. 제25조 제3항 경과조치에 의해: 호주와 뉴 기니아 외 지역에서 태어난 자로 (a) 이 법 시행 직전 영국 신민이었으며 (b) 아버지가 제25조 제1항의 경과조치 (a), (b), (c)를 충족한 자로 (c) 호주에 입국하거나 이미 호주에 입국한 자.
7. 제25조 제4항 경과조치에 의해: 여성으로서 (a) 이 법 시행 직전 영국 신민이었으며 (b) 이 법에 의해 호주 시민이 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살아있다면 될 수 있었던 사람과 결혼한 자로 이 법 시행 이전에 호주에 입국한 자.
8. 제25조 제5항 경과조치에 의해: 호주 또는 이 법 제7조가 적용되는 나라 밖에서 혼인하지 않은 부모에게 태어난 자로 출생 시 어머니가 영국 신민으로 호주 또는 뉴 기니아에 일상적으로 거주한 자.

이 법 제17조, 제19조, 제20조는 또한 다음과 같이 호주 시민권 상실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2012a).

1. 제17조: 성인이며 정신 건강한 호주 시민으로 호주와 뉴 기니아 외부 지역에 있는 동안 결혼 이외의 자발적이고 공식적인 행동을 통해 호주 이외 국적과 시민권을 획득한 자는 그에 따라 호주 시민권을 상실한다.
2. 제19조: 호주 이외 국가의 법에 의해 그 나라 국적자 또는 시민이 된 사람으로

호주와 전쟁 중인 나라의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복무와 함께 호주 시민권을 상실한다.

3. 제20조: 등록에 의해서 또는 귀화에 의해 호주 시민이 된 자로 이 법 시행 이후 계속하여 7년 동안 호주 또는 뉴 기니아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a) 2년째 되는 해와 그 다음해부터 매년 최소 한 번씩, 또는 법무장관이 특별한 기간을 허락한 경우 그 기간 안에, 호주 시민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거나 또는 (b) 그러한 거주가 호주 정부 또는 호주 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기구를 위한 복무가 아니거나 호주 또는 뉴 기니아 사람이거나 회사 등을 위한 고용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마지막으로 (d)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주 시민인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호주 시민권을 상실한다.

이처럼 <1948년 국적시민권법>은 호주 시민권 취득 조건과 상실 조건을 명문화함으로써 법적으로 ‘호주인’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이 영국 신민으로서의 호주 시민의 지위까지 부정할 것은 아니었다. 실제 이 법 제7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해 호주 시민이 되는 사람은 그 시민권에 의해 영국 신민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2012a: s. 7). 호주 시민이 영국 신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은 <1984년 개정 호주시민권법(Australian Citizenship Amendment Act 1984)>이 영국 신민으로서의 호주 시민의 지위를 규정한 위 조항(<1948년 국적시민권법> 제7조)과 “영국 신민으로 아일랜드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 법에 상관없이 다음을 근거로 영국 신민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한다면 계속 영국 신민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제8조, 그리고 “호주 시민이 아닌 영국 신민과 아일랜드 시민권자에게 적용 가능한 법”을 규정한 제9조 등 “영국 국적(British Nationality)”이라는 제목의 <1948년 국적시민권법> 제2장(Part II) 전부를 폐지하면 서부터이다(Australian Government, 2012c: s. 7).²⁰

²⁰ 호주 <국적시민권법>은 1984년 개정 이전에도 몇 차례 더 개정되었는데 그 가운데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55년 개정은 귀화 신청자에게 귀화 신청 최소한 2년 전에 귀화 의사를 신문에 광고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 귀화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1958년 개정은 호주 귀화자로 호주 또는 뉴 기니아 외 지역에서 7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호주 시민권 상실을 규정한 <1948년 국적시민권법> 제20조를 폐지하였다. 이어 1966년 개정과 1967년 개정은 귀화 신청 요건과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1969년 개정은 호주 시민의 지위를

한편 <1986년 개정 호주시민권법(Australian Citizenship Amendment Act 1986)>은 호주에서 태어난 자에게 자동적으로 호주 시민권을 부여하던 기존 법안을 폐지하는 대신 불법 이민자, 방문자, 일시 체류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의 호주 시민권 자동 취득을 불허하는 규정을 삽입하였다.²¹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호주에서 태어난 자라 할지라도 출생 시 부모 중 한 사람이 호주 시민권자이거나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에만 호주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Klapdor et al., 2009: 25).

이어 <1993년 개정 호주시민권법>은 제3조에 “호주 시민권은 호주연방 공동체의 공식 성원권(formal membership)을 표상한다. 호주 시민권은 모든 호주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연대의 끈(common bond)이다. 호주 시민권을 부여 받은 사람은 이러한 권리를 향유할 뿐 아니라 호주와 호주 국민에 대해 충성을 약속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민주적 신념을 공유하고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마지막으로 호주 법률을 유지하고 준수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삽입하였으며, 호주 시민권을 새로 취득한 사람들에게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충성을 맹세(take an oath of allegiance)’하는 대신 ‘호주와 호주 국민들(Australia and its people)’에게 ‘헌신을 서약(make a pledge of commitment)’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Australian Government, 2012b: s. 3-8).²²

영국 신민으로 규정한 기존 내용을 유지하는 가운데 호주 시민의 지위를 영국 신민의 지위보다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법안 틀을 변경하였다. 구체적으로 1969년 개정은 법안 명칭을 <국적 시민권법>에서 <시민권법(Citizenship Act)>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법에 의해 호주 시민이 되는 사람은 그 시민권에 의해 영국 신민이 된다”라는 기존 제7조 제1항 규정을 호주 시민은 “영국 신민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1973년 개정은 법안 명칭을 <호주시민권법(Australian Citizenship Act)>으로 다시 한 번 변경하였으며, 귀화와 영주권 취득 요건에 있어 영연방 국가 출신자들과 기타 국가 출신자들을 차별하던 기존 법안을 폐지하였다(Klapdor et al., 2009: 22-4).

²¹ <1986년 개정 호주시민권법>은 그러나 불법 이민자, 방문자, 임시 체류자에게서 태어난 자라 할지라도 무국적자가 될 경우 호주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Klapdor et al., 2009: 25).

²² <1973년 호주시민권법>은 새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나는 호주 여왕이신 엘리자베스 여왕과 법에 의해 그녀를 승계하는 승계자들에게 진심으로 충성을 다할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하지 않을 것을 전능하신 신 앞에 맹세하며 또한 호주 법을 충실히 준수하고 호주 시민으로서 나의 의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라는 내용의 ‘충성 맹세(oath of allegiance)’를 행하거나 또는 “나는 호주 여왕이신 엘리자베스 여왕과 법에 의해 그녀를 승계하는 승계자들에게 진

이어 <2002년 개정 호주시민권법(Australian Citizenship Legislation Amendment Act 2002)>은 “성인이며 정신 건강한 호주 시민으로 … 자발적이고 공식적인 행동을 통해 호주 이외 국적과 시민권을 획득한 자는 그에 따라 호주 시민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기존 제17조를 폐지하는 대신 호주 시민권자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법은 또한 혈통에 의한 시민권 취득 조항을 확대하여 해외에서 호주 시민권자 부모에게 태어난 자가 25세 이전까지 등록만으로 호주 시민권 취득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호주 시민권을 포기한 젊은이들이 25세 이전까지 호주 시민권 재취득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Klapdor et al., 2009: 27; Australian Government, 2012e).

마지막으로 ‘이주에 관한 공동상임위원회(Joint Standing Committee on Migration)’가 1994년 제출한 보고서(Australians All: Enhancing Australian Citizenship)와 ‘호주 시민권 자문위원회(Australian Citizenship Council)’가 2000년에 제출한 보고서(Australian Citizenship for a New Century)의 제안에 따라 기존 호주 시민권법의 기본이 된 <1948년 국적시민권법>의 대체 법안으로 제정된 <2007년 호주시민권법(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은 <1948년 국적시민권법> 체제 하에서 호주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그들의 자식들이 호주 시민권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과 귀화를 위한 거주 요건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7년 개정 시민권 시험에 관한 호주시민권법(Australian Citizenship Amendment (Citizenship Testing) Act 2007)>은 새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사회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호주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호주의 법률과 가치 등에 대해 시험을 치르는 ‘시민권 시험(citizenship test)’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Klapdor et al., 2009: 27-8).

심으로 충성을 다할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충심으로 약속하고 선언하며 또한 호주 법을 충실히 준수하고 호주 시민으로서 나의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충심으로 약속하고 선언한다”라는 내용의 ‘충성 확인(affirmation of allegiance)’을 행할 것을 요구하였다(Australian Government, 2012c: s. 19). <1993년 개정 호주시민권법>은 이러한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새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신의 이름 아래 호주와 호주 국민들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그리고 그들의 민주적 신념을 공유하고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며 그들의 법을 유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라는 내용의 ‘헌신 서약(pledge of commitment)’을 행할 것을 요구하였다(Australian Government, 2012d: s. 8).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 시민권 관련 법안 제·개정에 나타난 ‘호주인’의 경계 설정은 무엇보다도 영국과의 연관성을 단절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호주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본토 영국인들의 운명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법적으로 호주연방 정부의 독립성을 규정한 1942년 〈웨스트민스터 협약〉 채택과 ‘호주 시민’ 개념을 처음 도입한 1948년 〈국적시민권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어 1984년 〈호주 시민권법〉 개정은 영국 신민으로서의 호주 시민의 지위를 규정한 〈1948년 국적시민권법〉 제7조를 폐지함으로써 ‘영국인’과 구별되는 ‘호주인’의 지위를 법으로 처음 명문화하였다. 이 법 개정으로 호주인은 법적으로 더 이상 ‘영국 신민’이 아닌 ‘호주 시민’으로서의 지위만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호주인’의 경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영국과의 연관성을 단절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온 호주 시민권법 제·개정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행된 호주의 이민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연방 독립 이후 호주의 이민정책은 ‘백호주의’라는 이름하에 ‘유색 인종’의 이민을 억제하고 대신 영국계 백인의 이민을 장려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호주정부는 ‘유색 인종’의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1901년 〈이민제한법(Immigration Restriction Act 1901)〉을 제정하였고, 반면 영국계 백인의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1922년 〈제국 정착법(Empire Settlement Act 1922)〉을 제정하여 영국정부와 공동으로 영국계 백인 이민자에게 이주비와 생활비, 직업 훈련, 고용, 농장 불하 등을 지원하였다(Klapdor et al., 2009: 4).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20년대 약 300,000명(이중 약 2/3는 영국계)의 백인들이 유럽에서 호주로 이주해왔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과 이어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유럽에서 호주로 이민 오는 백인들 숫자는 급감하였고, 1946년에는 오히려 호주로 이민 오는 사람보다 호주를 떠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 2001: 3).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경제 성장과 국방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 증가인가 아니면 멸망인가(populate or perish)”라는 슬로건 아래

영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으로부터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²³ 특히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일본과의 전쟁에서 ‘옐로우 페릴(Yellow Peril)’, 즉 아시아 국가로부터 침입이 있을 경우 소규모 인구로는 자국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황인종에 대한 공포’를 경험한 호주인들은 안보를 위해 이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Klapdor et al., 2009: 5; 양승윤 외, 2006: 49-50). 또한 전후 경제 성장과 미개발 지역 개발을 위해서도 숙련 및 미숙련 노동자의 이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시 호주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국인 투자 증가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산업 노동력, 특히 하층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문경희, 2011: 215).

이에 호주 정부는 연방 차원에서 이민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1945년 ‘이민부(the Federal Department of Immigration)’를 창설하였고 초대 이민부 장관인 아서 칼웰(Arthur Calwell)의 주도 하에 매년 이민을 통해 인구를 1%씩 (그리고 자연증가를 통해 1%씩, 도합 매년 2%씩)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특히 호주 정부는 영국으로부터 ‘바람직한(desirable)’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영국군 출신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제한 없이 호주로 이민 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유통과(free passage)’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여타 영국인 이민자들에게도 이민에 필요한 비용과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1946년 ‘자유통과’ 프로그램은 폴란드 공산화와 함께 본국 귀국을 머뭇거리던 폴란드 군 출신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되었으며 이후 미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군 출신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되었다. 또한 호주 정부는 유럽계 이민자 유치를 위해 네덜란드, 이태리 등과 ‘이민 지원 협정(Assisted Migration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45~46년과 1946~47년 각각 약 10,000명과 6,500명의 순수출을 기록했던 이민자 수는 1947~48년 약 3만 명의 순수입을 기록할 정도로 증가하였고, 1949년에는 1948년보다 네 배 이상 증가한 118,800명을 기록하였으며, 1950년에는 153,685명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였다(Klapdor et al.,

23 “인구 증가인가 아니면 멸망인가(populate or perish)”라는 슬로건은 1937년 빌리 휴(Billy Hughes)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민부 장관인 아서 칼웰(Athur Calwell)이 다시 사용하였다.

2009: 5;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 2001: 3-4).

호주 정부는 이처럼 유럽에서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영국계 백인 중심의 ‘단일한(homogeneous)’ 호주 문화를 유지하고자 이민자들에게 ‘동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즉, 이민자들이 영국계 백인 호주인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호주 정부는 ‘동화가 불가능한’ 유색인종들을 배제하기 위해 예전과 다름없이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이민 정책을 시행하였다. 당시까지도 대부분의 영국계 호주인들은 아시아인 또는 황인종들이 호주의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따라서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확연히 다른 아시아인들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호주 사회의 근간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본의 이익에도 반한다고 간주하고 있었다(문경희, 2011: 215-6).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증하던 이민자 수는 그러나 1950년대 들어 유럽이 전후 부흥 사업으로 노동력 부족을 겪게 되고 반면 호주가 주요 수출 상품 가격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급감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로 이민 온 이민자 수는 1950~51년 89,000명 수준으로 줄었으며 1953~54년에는 38,500명 수준으로 줄었다. 또한 유럽에서 호주로 이주하는 난민 숫자도 급격히 줄어 1949년 75,486명을 기록한 난민 숫자가 1953~54년에는 446명 수준으로 줄었다(Klapdor et al., 2009: 6-7).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 정부는 유럽계 출신 이민자 수를 늘리기 위해 1954년 미국,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을 지원하는 ‘일반지원제도(General Assisted Passage Scheme)’를 도입하였고, 1956년에는 ‘재결합 작전(Operation Reunion)’이라는 명칭 하에 소련,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출신 이민자들이 고국에서 친척들을 초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약 30,000명의 이 지역 출신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 이외에도 호주 정부는 유럽계, 특히 영국계 출신자들의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1957년 “영국인들을 데려와라(Bring out a Briton)”라는 이민 장려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1958년에는 영국계 출신 이민자들에게 호주 태생 호주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영국 정부와 협정을 맺었다. 또한 이 시기 호주 정부는 독일, 스페인 등과 체결한 ‘이민 지원 협정’ 연장에 합의하였다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 2001: 5-6).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호주로 이주해오는 이민자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호주 정부는 비유럽계 출신 이민자 수를 늘리기 위해 195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백호주의’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호주 정부는 1957년 귀화 제도를 고쳐 호주에 15년 이상 거주한 비유럽계 출신자들의 (반면 유럽계 출신자들은 5년 이상 거주만으로도) 호주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였으며, 1958년에는 기존 <이민제한법(Immigration Restriction Act 1901)>을 <이주법(Migration Act 1958)>으로 개정하면서 비유럽계 출신자들의 이민을 막아왔던 ‘받아쓰기’ 시험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후 호주 정부는 비유럽계 출신자들의 이민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 이를 바탕으로 1966년 “호주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이민] 신청은 정착자로서 적절한지, 기꺼이 호주 사회에 통합하려 하는지, 호주에 유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새로운 이민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호주 정부는 1966년 ‘임시 거주자(Temporary Resident)’ 자격으로 호주에 입국한 비유럽계 출신자들도 다른 유럽계 출신자들과 마찬가지로 5년 이상 호주에 거주할 경우 호주 시민권 취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비유럽계 이민자 수는 1966년 746명에서 1971년 2,696명으로 증가하였다(Australian Government, 2012g).

그리고 마침내 1972년 선거에서 2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는 1973년 인중에 따라 이민자를 차별하던 기존 백호주의 정책을 공식 폐지하고 “출신지가 어디인지 상관없이 모든 이주자들이 3년 영주 기간이 지나면 호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호주시민권법(Australian Citizenship Act 1973)>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 아시아계 이민자 수가 서서히 증가하여 1980년대 들어서 영국 및 아일랜드계 이민자 수를 추월하게 되었다(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 2001: 17).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70~71년 이민자 가운데 아시아인의 비중은 5.4%에 불과하였으나 1983~84년 33.2%로 증가한 반면 영국 및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비중은 1972~73년 45.1%에서 1983~84년 23.5%로 감소하였다(김형식, 1997: 362). 또한 표 1에 의하면 2008년 7월에서 2009년 6월 사이 정주를 목적으로 호주로 이민 온 이민자 가운데 아시아 출신 이민자의 비중은 44.1%에 달하는 반면 유럽 출신 이민자의 비중은 18.5%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

표 1 출생지별 정주민 수(2008년 7월~2009년 6월)

출생지	이민자 수	비율(%)
오세아니아 및 남극대륙	30,010	19.0
유럽	29,294	18.5
북아프리카 및 중동	11,143	7.1
동남아시아	21,008	13.3
동북아시아	20,977	13.3
남아시아	25,900	16.4
중앙아시아	1,731	1.1
북미	2,254	1.4
중남미 및 캐리비안 지역	1,979	1.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3,025	8.2
기타	700	0.4
계	158,021	100.0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2012g.

실은 위에서 살펴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민권법 제·개정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민 문제에 있어서도 호주인들이 점차 영국과의 연관성을 줄여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애버리진을 ‘호주인’의 범주에서 ‘배제’하던 기존 정책도 196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이들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그 이전부터 행해오던 애버리진에 대한 억압 정책을 계속 유지하였다. 실례로 1948년 제정한 <국적시민권법>이 호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호주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애버리진에게는 호주 시민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았다(Mercer, 2003: 422).²⁴ 또한 “연방, 주, 또는 기타 지역 인

²⁴ 대표적 시민권 가운데 하나인 선거권의 경우 1948년 <국적시민권법> 제정 이후 호주 연방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애버리진들에게 1949년부터 일부 연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우스 오스트랄리아, 빅토리아, 타스마니아, 뉴 사우스 웨일즈 주는 1949년부터 애버리진에게 주 수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부여하였다(반면 웨스턴 오스트랄리아와 퀸즐랜드는 각각 1962년과 1965년까지 그러한 권리를 부정하였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애버리진들에게 일부 선거권이 부여되었으나 그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백인 관리들이 애버리진들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며 내륙

구를 조사하는데 있어 애버리진 원주민들(aboriginal natives)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1900년 제정 연방헌법 제127조에 따라 호주 정부는 독립 이후 1960년대까지 애버리진을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계속 배제해 왔다(Museum of Australian Democracy, 2012a).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967년 국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진 연방헌법 개정은 연방의회가 입법을 통해 애버리진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기존 헌법 제51조를 개정하였으며, 또한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애버리진을 배제하는 근거가 된 헌법 제127조를 삭제하였다. 이에 1971년 실시된 인구센서스는 처음으로 애버리진을 조사에 포함하였다. 또한 호주 연방정부는 애버리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2년 애버리진 문제를 전담하는 “애버리진 문제 전담부(Department of Aboriginal Affairs)”를 설치하기도 하였다(Mercer, 2003: 430-431).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당시 애버리진에 대한 연방정부의 실질적 관심은 거의 없었으며 특히 애버리진들이 제기한 토지권에 대한 요구 사항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양승윤 외, 2006: 293).

애버리진 정책에 있어 실질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노동당의 호크(Rober Hawke) 정권이 집권하고 있던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특히 1991년 6월 ‘원주민 화해 평의회(Council for Aboriginal Reconciliation)’ 입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호주 정부는 2001년까지 10년 간 ‘재화해 과정(reconciliation process)’을 진행하며 애버리진을 호주인의 일원으로 포용하고자 노력하였다(Mercer, 2003: 431-435).²⁵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애버리진들은 법적으로는 다른 호주 시민들과

(outback) 지역에서는 애버리진이 참여한 선거 결과에 대한 광범위한 조작이 이루어졌다. 또한 호주의 다른 시민들과 달리 애버리진들에게는 1983년 이전까지 선거인 명부에 등록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선거참여 또한 1987년이 되어서야 의무가 되었다(Mercer, 2003: 425).

²⁵ 198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이러한 화해 분위기는 애버리진들의 토지권 주장으로 이어졌다. 특히 1992년 애버리진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호주 연방 최고법원(the Supreme Court)은 에드워드 코이키 마보(Edward Koiki Mabo)가 제소한 토지권을 인정하며 기존의 “테라 놀리우스(terra nullius)” 개념을 무효화하였다. 약 200여 년 전 영국이 선언한 법적 개념인 테라 놀리우스는 ‘무(無) 소유주의 땅’이라는 의미로 영국 백인들이 이주해오기 전까지 호주 대륙은 무주물(無主物)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개념이다. 이러한 법 개념에 따라 1992년 이전까지 애버리진이 제기한 모든 토지권 소송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1992년 마보 소송 판결에서 연방 최고법원은 토지소유권이 백인 정부에 의한 승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백인 정착 이전부터 이미 존재해왔던 소유권으로부터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 판결 이후 ‘원주민 권리(Native Title)’가 곧바로 효력을 갖게 되었고 이후 애버리진 땅에 대한 토지권을 찾기 위한 움

마찬가지로 평등한 시민권을 가진 ‘호주인’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아직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토지권, 자치권 문제 등에서 아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Mercer, 2003: 422).

마지막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 영토 변화에 따른 호주인의 경계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01년 6개 식민지 연합으로 탄생한 호주 연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몇 차례 영토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에 따라 호주인의 경계 또한 변화해 왔다. 우선 1902년 영국에서 호주로 귀속된 이후 호주 통치 하에 있던 파푸아와 뉴 기니아가 1975년 9월 16일 ‘파푸아 뉴 기니아(Papua New Guinea)’로 독립하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던 ‘호주인’들이 호주 시민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1975년 9월 10일 선포된 “파푸아 뉴 기니아 독립에 따른 호주 시민권 규정[Papua New Guinea Independence (Australian Citizenship) Regulations]”은 파푸아 뉴 기니아 “독립 직전 <1948~1973년 호주 시민권법>에 의해 호주 시민이었던 자는 [파푸아 뉴 기니아] 독립일부터 파푸아 뉴 기니아 헌법 조항에 따라 독립 파푸아 뉴 기니아의 시민이 되며, 그와 동시에 호주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라고 명시하였다(Australian Government, 2012). 반면 인도양 상에 위치한 27개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코코스 군도가 1955년 <코코스 (킬링) 군도 법(Cocos (Keeling) Islands Act 1955)>에 의해 영국에서 호주로 통치권이 이전되면서 호주 정부는 ‘영국 신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던 이 지역 주민들에게 호주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 시민’이 되고자 선언한, 그리고 절차에 따라 등록한 이 지역 주민들은 법적으로 ‘호주인’이 될 수 있었다(Australian Government, 2012).²⁶ 마찬가지로 1958년 <크리스마스 섬 법(Christmas Island Act 1958)>에 의해 크리스마스 섬에 대한 통치권이 영국에서 호주로 이전됨에 따라 이 섬 거주 주민들 또한 이후 법적으로 “호주인”이 될 수 있었

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하였다. 노동당 정부는 이와 함께 3단계에 걸친 애버리진 주권 관련 계획을 실행에 옮겼는데 우선 첫 번째 단계로 1993년 ‘원주민 권리 법(Native Title Act)’을 제정하여 일부 원주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정부는 토지재정 확보를 통해 원주민의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사회정의 정책(Social Justice Package)을 제정하여 원주민 권익을 보호하기로 결정하였다(양승운 외, 2006: 295-7).

²⁶ 코코스 군도는 이후 1984년 4월 6일 주민들의 투표로 호주에 완전히 통합되었으며 호주 연방 정부는 행정관을 파견하여 이 섬을 통치하고 있다(양승운 외, 2006: 7).

다(Australian Government, 2012k).

IV. 결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770년 영국의 호주 합병 이후 유럽에서 호주로 이주해온 호주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식민지 개척 초기에는 자신들을 ‘영국인’으로, 그리고 점차 시간이 흐르며 식민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토 영국인과의 차이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영국에 거주하는 영국인’과 구별되는 ‘호주에 거주하는 영국’으로, 그리고 1901년 호주연방 독립을 거치며 ‘호주인인 동시에 영국 국적을 가진 영국인’으로 관념하는 등 자신들의 정체성을 역사적 상황에 따라 변화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20세기 중반까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영국과의 연관성 속에서 관념하였으며 자신들을 “호주로 이주해와 뿌리내린 새로운 앵글로 색슨 이민자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본토 영국인들의 운명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법적으로 호주 연방 정부의 독립성을 규정한 〈웨스트민스터 협약〉 채택(1942년)과 ‘호주 시민’ 개념을 처음 법으로 도입한 〈국적시민권법〉 제정(1948년)으로 이어졌다. 이후 1969년 〈국적시민권법〉 명칭을 〈시민권법〉으로 개정하면서 호주 정부는 호주 시민의 지위를 영국 신민으로 규정한 기존 내용을 유지하는 가운데 호주 시민의 지위를 영국 신민의 지위보다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법안 틀을 변경하였다. 또한 1984년에는 〈시민권법〉 명칭을 〈호주시민권법〉으로 개정하면서 ‘호주 시민’의 지위를 ‘영국 신민’으로 규정한 기존 법률 제7조를 폐지하였다. 이 법 개정으로 ‘영국인’과 구별되는 ‘호주인’의 지위가 처음으로 법으로 명문화되었으며 호주인은 법적으로 더 이상 ‘영국 신민’이 아닌 ‘호주 시민’으로서의 지위만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1770년 영국인들의 호주 합병 이후 지난 240여 년 기간 동안 호주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관념하는데 있어 영국과의 연관성을 점차 단절해왔으며 이는 ‘영국 신민’에서 ‘호주 시민’으로의 법적 지위 변화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의 이민 정책과 애버리

진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는 1901년 연방 독립 이후 호주 사회를 영국계 백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유사 '단일민족국가(homogeneous nation)'로 유지하고자 '백호주의'로 불리는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을 채택하여 '유색 인종', 특히 중국인과 태평양 도서 출신자들의 호주 이민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 정부는 안보와 경제적 이유로 이민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럽계 출신 이민자 숫자가 줄어들자 대신 비유럽계 출신 이민자 수를 늘리기 위해 195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백호주의'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결과 1980년대 이후 아시아계 이민자 숫자는 영국 및 아일랜드계 이민자 숫자는 물론 유럽계 이민자 숫자를 추월하게 되었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유럽인 정착 이전부터 호주에 거주해오던 애버리진을 '타자'화하고 억압하던 호주의 정책도 196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1년 6월 '원주민 화해 평의회' 입법안 통과 이후 호주 정부는 2001년까지 10년 간 '재화해 과정'을 진행하며 애버리진을 '호주인'의 일원으로 포용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외에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으로부터 코코스 군도와 크리스마스 섬에 대한 통치권을 이양 받으며 호주 정부는 이 지역 거주 주민들을 '호주인'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인'의 경계 설정 변화로 호주는 현재 인종적, 문화적 구성에 있어서 '다인종(multiracial)', '다문화(multicultural)' 국가가 되었다. 표 2는 부모의 출신지에 따른 혈통별 2001년과 2006년 호주 인구센서스 결과를 보여준다. 표 2에 의하면 2006년 부모 출신지를 기준으로 호주 출신자들이 '호주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호주 출신자들이 대부분 영국계 백인의 후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직까지 이들 영국계 출신이 '호주인'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는 그러나 동시에 '호주인'의 상당수가 중국계, 인도계, 필리핀계, 레바논계, 베트남계, 신탈라족(스리랑카 지역 부족) 등 비유럽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정주를 목적으로 호주로 이민 오는 이민자 가운데 아시아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호주인'의 범주에서 이들 아시아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호주인'의 민족 정체성을 재구성하는데 있어

표 2 부모 혈통별 호주 인구(2001년, 2006년)

부모 혈통 ^{a)}	2001년	2006년
호주	6,674,946	7,371,824
호주 애버리진	93,486	115,280
미국	43,831	56,283
중국	554,564	669,890
크로아티아	105,325	118,046
네덜란드	266,428	310,089
영국(English)	6,298,945	6,283,650
필리핀	129,341	160,374
프랑스	78,411	98,333
독일	734,921	811,540
그리스	374,484	365,147
헝가리	62,507	67,628
인도	156,067	234,722
아일랜드(Irish)	1,901,621	1,803,741
이탈리아	796,327	852,418
레바논	161,831	181,745
마세도니아	81,745	83,983
몰타(Malta)	136,206	153,803
마오리	72,294	92,912
뉴질랜드	122,022	160,681
폴란드	150,104	163,802
러시아	59,907	67,054
스코트랜드	534,882	1,501,201
세르비아	96,895	95,365
신할라족	58,437	73,856
남아프리카	51,785	79,521
스페인	74,818	84,322
터키	54,394	59,393
베트남	156,065	173,658
웨일즈(Welsh)	83,471	113,250
기타 ^{b)}	1,134,335	1,397,647
혈통 미진술	1,268,076	1,609,443
총 응답수 ^{c)}	22,568,471	25,410,601
총 인원수 ^{c)}	18,588,308	19,855,292

출처: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2.

a) 2001년 조사 상위 30개국 기준. b) 1인이 2회 응답한 경우 1회만 포함. c) 복수 응답으로 총 응답수와 총 인원수가 동일하지 않음.

영국제 백인 중심의 기존 방식이 아니라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중심으로 ‘호주인’의 경계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새로운 ‘상상(imagination)’이 필요함을 보여준다(Moran, 2011: 2167-2169).

투고일: 2012년 5월 4일 | 심사일: 2012년 5월 23일 |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2일

참고문헌

- 김범수. 2009. “‘국민’의 경계 설정: 전후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43집 제1호, 177-202.
- 김형식. 1997. 『호주의 사회와 문화』. 서울: 지구문화사.
- 문경희. 2011. “호주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동학: 민족 정체성 형성과 인종·문화 갈등.” 이희진·문경희 외 편. 『현대 호주사회의 이해』. 서울: 한국학술정보(연세대학교 호주연구센터).
- 양승윤 외. 2006. 『호주·뉴질랜드』.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Anderson, Benedict.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2. “Census Tables: Ancestry by Country of Birth of Parents – Time Series Statistics.” <http://www.censusdata.abs.gov.au>
- Australian Government. 2012a. “An Act Relating to British Nationality and Australian Citizenship. Assented to 21st December, 1948.” http://foundingdocs.gov.au/resources/transcripts/cth13_doc_1948.pdf
- _____. 2012b. “Australian Citizenship Act 1973.” <http://www.comlaw.gov.au/Details/C2004A00041>
- _____. 2012c. “Australian Citizenship Amendment Act 1984.” <http://www.comlaw.gov.au/Details/C2004A02993>
- _____. 2012d. “Australian Citizenship Amendment Act 1993.” <http://www.comlaw.gov.au/Details/C2004A04626>
- _____. 2012e. “Australian Citizenship Legislation Amendment Act 2002.” <http://www.comlaw.gov.au/Details/C2004A00942>

- _____. 2012f. “Pacific Island Labourers Act 1901.” http://foundingdocs.gov.au/resources/transcripts/cth4i_doc_1901.pdf
- _____. 2012g. “Fact Sheet 8: Abolition of the ‘White Australia’ Policy.” <http://www.immi.gov.au/media/fact-sheets/08abolition.htm>
- _____. 2012h. “Fact Sheet 2: Key Facts in Immigration.” <http://www.immi.gov.au/media/fact-sheets/02key.htm>
- _____. 2012i. “Papua New Guinea Independence (Australian Citizenship) Regulations.” <http://www.comlaw.gov.au/Details/C2004H02562>
- _____. 2012j. “Cocos (Keeling) Island Act 1955.” <http://www.comlaw.gov.au/Details/C2004C02820>
- _____. 2012k. “Christmas Island Act 1958.” <http://www.comlaw.gov.au/Details/C2004C02737>
-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2012. “Attorney-General (Cth) vs. Ah Sheung [1906].” <http://www.austlii.edu.au/au/cases/cth/HCA/1906/44.html>
- Clarke, F. G. 1995. 임찬빈 역. 『호주의 역사』. 서울: 나남출판.
- Crowley, F. K. 1955. “The Foundation Years, 1788-1821.” Gordon Greenwood, *Australia: A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Sydney: Angus & Robertson Publishers), 1-45.
-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 Australian Government. 2001. *Immigration: Federation to Century’s End 1901-2000*. <http://www.immi.gov.au/media/publications/statistics/federation/timeline1.pdf>
- Dodson, Mick. 1996. “Defining Indigenous Citizenship Rights.” *Media & Culture Review* 2(1), 4.
- Gollan, R. A. 1955. “Nationalism, the Labour Movement and the Commonwealth, 1880-1900.” Gordon Greenwood, *Australia: A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Sydney: Angus & Robertson Publishers), 145-195.
- Greenwood, Gordon. 1976. *The Future of Australian Federalism*. Brisbane: University of Queen’s Land Press.
- Governor-General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2. “Governor-General’s Role.” <http://www.gg.gov.au/content.php/category/id/1/title/role>.
- Klapdor, Michael, Coombs, Moira, and Bohm, Catherine. 2009. *Australian Citizenship: A Chronology of Major Developments in Policy and Law*. Social

- Policy and Law and Bills Digest Sections, Parliament of Australia. http://www.citizenship.gov.au/_pdf/cit_chron_policy_law.pdf
- Mercer, David. 2003. "Citizen Minus? Indigenous Australians and the Citizenship Question." *Citizenship Studies* 7(4), 421-445.
- Moran, Anthony. 2011. "Multiculturalism as Nation-building in Australia: Inclusive National Identity and the Embrace of Diversity." *Ethnic and Racial Studies* 34(12), 2153-2172.
- Museum of Australian Democracy. 2012a.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1900."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Documenting Democracy*. <http://foundingdocs.gov.au/item-sdid-82.html>
- _____. 2012b. "Aboriginal Protection Act 1869."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Documenting Democracy*. <http://foundingdocs.gov.au/item-sdid-22.html>
-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2012. "John Curtin: Guide to Archives of Australia's Prime Minister." http://www.naa.gov.au/naaresources/publications/research_guides/pdf/curtin/curtin.pdf
- Rubenstein, Kim. 2000. "Citizenship and the Centenary: Inclusion and Exclusion in 20th Century Australia." *Melbourne University Law Review* 24, 576-608.
- Quick, John. 1919. *The Legislative Powers of the Commonwealth and the States of Australia: With Proposed Amendments*. Melbourne.
- Stratton, Jon, and Ien Ang. 1994. "Multicultural Imagined Communities: Cultural Difference and National Identity in Australia and the USA." *Continuum: the Australian Journal of Media & Culture* 8(2).
- White, Richard. 1985. *Inventing Australia*. Sydney: Allen & Unwin.
- Wikipedia. 2012a. "Statute of Westminster 1931." http://en.wikipedia.org/wiki/Statute_of_Westminster_1931
- _____. 2012b. "Commonwealth Realm." http://en.wikipedia.org/wiki/Commonwealth_realm
- _____. 2012c. "Australia Act 1986." http://en.wikipedia.org/wiki/Australia_Act_1986
- _____. 2012d. "History of British Nationality Law." http://en.wikipedia.org/wiki/History_of_British_nationality_law
- _____. 2012e. "Immigration Restriction Act 1901." http://en.wikipedia.org/wiki/Immigration_Restriction_Act_1901

_____. 2012f. "Half-Caste Act." http://en.wikipedia.org/wiki/Half-Caste_Act

_____. 2012g. "Australian Nationality Law." http://en.wikipedia.org/wiki/Australian_nationality_law

Abstract

The Boundaries of “Australians”: The Birth of Australian National Identity and Its Changes

Bumso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how the national boundaries of “Australians” have been constructed since the late 18th century. Determining the boundaries of their members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that political communities faced in the early modern period. Faced with this problem, modern states have drawn their boundaries by including those who shared (or were believed to share) common descent, language, culture, history, identity, and feelings of belonging as nationals, while excluding those who did not share these qualities as “non-nationals.” These constructed boundaries have been legally and institutionally represented by way of granting citizenship only to the “nationals.” Focusing on the case of Australia, this paper examines how the boundaries of national members have been drawn legally and institutionally. In doing so, this paper shows that the boundaries of “Australians” have been constructed to reduce Britishness from the Australian national identity while including non-European immigrants and Aborigines as “Australian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definition of “Australians” be stretched as the number of Asian immigrants increases in Australia.

Keywords | Australia, national identity, nationality, citizenship, immigration, Aborigine